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공고 (GMRA 2020-0022호)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사업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지원을 도모하고자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7. 0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목 적** : 경기도내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도우미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심리적 안정 및 재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기술훈련비 지원

□ **접수기간** : 2020년 7월 09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https://www.gmr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접수장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남서,남동,북부)

2. 지원내용

□ 사업정리도우미 컨설팅

○ 권역별 금융상담, 심리치유, 창업·경영상담, 직업상담 등 전문분야별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소상공인지원자금 연계

※ 참고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https://www.gcgf.or.kr)

□ 사업지원금 지원

○ 재기장려금

2020년도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비용 지원금

○ 기술훈련(교육수강)비

2020년도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취업·재창업 및 업종전환을 위한 기술훈련(교육수강) 비용 지원금

□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 내용

○ 컨설팅 : 소상공인 니즈별 전문컨설팅 지원

· 컨설팅수행 : 3개권역 (남서센터, 남동센터, 북부센터)
· 컨설턴트 전문분야 : 직업상담, 심리치료, 창업·경영지원, 금융관리 등

컨설팅분야	지원내용
금융분야	사업운영 현황, 가계손익 현황, 가치평가, 폐업 소상공인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심리분야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분석, 심리상담 수행을 통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창업·경영분야	소상공인 경영관련 운영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분석, 재창업 소상공인 아이템 개발 선정 및 성장 가능성 등
직업분야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분석, 직업정보 제공, 직업선택, 직업계획, 구직활동 검수 등

○ 사업지원금 : 재기장려금 또는 기술훈련비

· 재기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지역화폐로 150만원 지원
· 기술훈련비 : 재기 소상공인 대상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조치 됩니다.

3. 단계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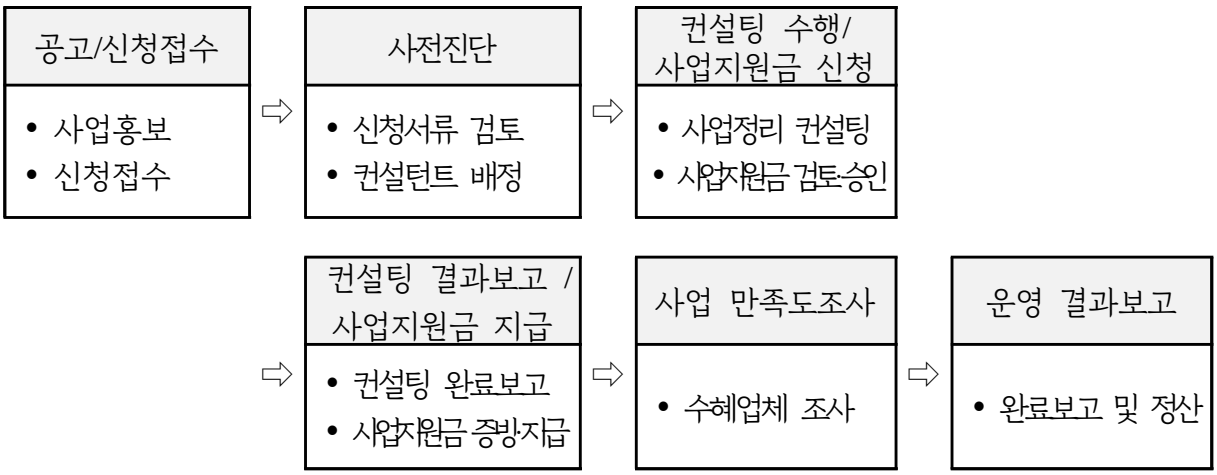

4.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순으로 경기도내 2020년도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자 선정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재기장려금

구 분	사업지원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	• **「道내 2020년도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사업 컨설팅」 수료자로서 「사업체를 폐업」 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선정 제외기준	• **旣사업수혜자** : '18~20년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사업지원금 수혜자 • **다중사업자** : 사업신청한 사업체 외 他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기준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사업자 • **他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또는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수혜자 :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는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기준 120% 초과**

※ 중위소득 기준 :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9,000	70,702	29,273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 출처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_2020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표준매뉴얼)

* 상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년 표준매뉴얼 공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훈련비

구 분	사업지원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	• **「道내 2020년도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사업 컨설팅」 수료자로서 「사업체 업종변경 또는 유지」하는 재기 소상공인**
지원금선정 제외기준	• **既사업수혜자** : '18~20년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사업지원금 수혜자 • **다중사업자** : 사업신청한 사업체 외 他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기준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사업자 • **교육기관 수강 교과목 제한** 학원의 교급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교과목의 범위 중 [입시·검정 및 보습, 독서실, 특수교육, 인문사회 등]의 교과목은 제외함 **※ "【붙임1】(서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류" 참조**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대상자(사용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수혜자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소상공인

※ 교육기관 인증서류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등 기타 관할 교육청 인증서류

○ 지원대상 제외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안내서식 1호]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에 해당하는 업종
- [안내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붙임1】(서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류" 참조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년 7월 09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https://www.gmr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남서,남동,북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

□ 신청서류 (서식 홈페이지 게시)

항목	제출자료 목록
컨설팅 필수서식	1. 컨설팅 지원신청서 (필수서식 제1호)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필수서식 제2호)
	3. 지원금 대상 확인서 (필수서식 제3호)
재기장려금 필수서식	1. 재기장려금 신청서 (필수서식 제4호)
기술훈련비 필수서식	1. 기술훈련비 신청서 (필수서식 제5호)
	2. 기술훈련비 완료확인서 (필수서식 제6호)
별지서식	1. 기술훈련비 변경승인 요청서 (별지서식 제1호)
	2. 사업지원금 포기승인 요청서 (별지서식 제2호)
안내서식	1.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안내서식 제1호)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소규모 기준 (안내서식 제2호)
	3. 기술훈련비 지원 가능 교과목 범위 (안내서식 제3호)

※ 서식내의 구비서류 확인바랍니다.

6.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 제출처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신청업체 소재지 해당 지역의 접수처를 선택하여 제출

신청업체 소재지	접수처		
	우편번호	주 소	접수문의
수원, 용인,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안성, 하남	1275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대표번호 1600-8001 031-8028-5724
시흥, 안산, 안양, 군포, 광명, 부천, 김포, 평택, 오산, 화성, 과천, 의왕	15073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 비지니스센터 8층	대표번호 1600-8001 031-509-0256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 고양, 파주, 구리, 연천, 의정부, 동두천	1209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4-5 삼성홈타워 4층	대표번호 1600-8001 031-515-8665

※ 우편접수 미도착, 신청서류 미제출, 서류미비 등 불이익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7. 유의사항

□ 본 공고 게시일 이후 신청서 접수순으로 모집

□ 사업지원금 지원 유의사항

(1)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 및 유사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수행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관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지원내용 등)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지원금 변경승인 요청서 **[별지서식 제1호]** 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총 사업지원금의 상향 변경은 불가함

(3)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사업지원금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지원금 지출의 방식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함

(5) 사업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지원금 완료확인서 및 교육기관 교육수료증은 사업종료 후 즉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사업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확인서,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지역화폐 사용내역서로 확인 가능함

(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7) 기술훈련(교육수강) 지원금 지원 추진시 교육기간 승인 기준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학원의 종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기준하여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교과목 중 [입시·검정 및 보습, 독서실, 특수교육, 인문사회 등]을 제외한 교과목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전문학교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검증에 관련된 법률

【붙임1】 [서식]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류